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2024년 한공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2024. 12. 20.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목 차

I. 심사·감리 실시 통계	1
II. 2024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3
2.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5
3. 재고자산 허위계상	7
4. 재공품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9
5.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1
6.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3
7.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15
8. 구성원이 아닌 자의 감사업무 참여	16

I. 심사·감리 실시 통계

1 심사·감리 실시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심사·감리 건수	385	245	209	323	268	102

* '24.11월말 기준(한공회 결산월은 3월)

※ 감사인감리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업무자료 ⇒ 회계 ⇒ 회계감리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2 위반유형별 지적건수

유형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A.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8	10	10	16	17	25
1. 매출채권, 매출	3	1	3	7	3	4
2. 재고자산, 매출원가	1	-	1	1	-	7
3. 유형자산	3	1	-	4	-	1
4. 무형자산	1	1	3	-	-	2
5. 유가증권	2	1	2	3	12	5
6. 기타의 자산	1	-	1	1	-	1
7. 기타채권 대손평가	1	3	-	-	-	-
8.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2	3
9. 차입금 등 부채	-	-	-	-	-	2

유형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 기타손익	2	3	-	-	-	-
11.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4	-	-	-	-	-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2	2	4	10	9	8
1.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	-	1	-	-	1
2.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2	-	2	4	4	2
3.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	-	2	1	4	3	4
4. 영업현금흐름 오류	-	-	-	2	2	1
C. 주식 미기재	3	3	3	4	16	11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	1	2	4	12	7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2	2	1	-	4	4
3. 기타 주식 미기재	1	-	-	-	-	-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2	1	1	-	-	3
E. 회계처리기준위반이 없는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사항	-	-	-	-	16	5
1.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	-	-	8	3
2.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	-	-	6	-
3.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	-	-	2	2
F. 법규 위반사항	1	4^{*3}	4^{*3}	2^{*3}	4^{*3}	2^{*3}
합 계	26	20	22	32	62	54

*1 증선위 의결(보고) 종료 기준

*2 제재조치한 회사별로 2개 이상의 위반유형이 지적된 경우 중복 계산

*3 법규위반은 위반유형의 개수임

Ⅱ. 2024년 심사·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골프호텔 및 휴양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최초 약정 이후 수차례 차입원금 등 조건 변경)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입 약정서상 정한 이자 및 위약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입금을 합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 성격으로 간주하여 수년간 최초 차입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패소하였음에도, 수년간 진행된 소송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송사건 진행 현황 등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변경된 차입약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차입금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면서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외부투자자와의 소송진행 결과(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차입금 및 손해배상충당부채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97 및 142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14의2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재협상 등으로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금융부채를 조정해야 한다

③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14.11 등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 내용을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입 약정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차입금을 조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소송 진행 경과를 충당부채의 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18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문단12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 조회 결과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510(감사증거 - 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9와 문단10에 따르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의 차입금이 수년간 미지급이자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주요 차입 및 합작

개발계약에 대한 검토, 차입금 잔액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절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또한,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인이 발송한 변호사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결과를 반영한 충당부채 인식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차입금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조회절차 등의 수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소송 리스트에 주요 소송 사건이 누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비용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외부조회를 계획하여야 하며, 조회서가 미회신된 경우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1. 회사의 회계처리

A회사는 골프장 및 숙박시설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골프호텔 및 휴양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자금차입약정 및 합작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고, 계약상 차입금 만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차입금의 상환 예상시기를 합작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로 판단하여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또한, 회사가 개발 인허가 획득 등 합작개발계약상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회사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및 외부투자자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22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입금의 만기가 경과하였고, 외부투자자와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회사가 부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차입금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감사인은 주요 차입 및 합작개발계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회사의 판단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관련 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유동성 분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가 부채 등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 허위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회사는 철강 구조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기둥을 제작하여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회사는 x1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고 수불부를 마감하고 가결산을 수행한 결과 원재료인 철판 가격은 급등한 반면 제품 납품단가는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신규자금의 조달 및 x2년에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에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이미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을 기말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원재료 또는 제품인 것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7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문단 7.20에 의하면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 및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재고자산 수불부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추가 검토절차나 감사의견 변형없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계부정을 인지한 경우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재공품 과소계상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A회사는 선박용 펌프, 압축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지배회사의 적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분사된 첫해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경영진은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세무조사 가능성, 지배회사로부터의 유상증자 및 대여 중단 등을 우려하여 세전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말 결산 시 판매가 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원재료 출고 전표의 승인을 해제하고 판매가 된 프로젝트 코드로 변경 입력한 후 저장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할 재료를 매출원가로 대체시키고, 직접노무비와 직접제조경비도 재료비 조정 방식과 동일하게 프로젝트 코드를 대체하여 수정하였으며, 직접비와 연동하여 배부되는 간접비도 재공품에 과소배부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원재료 출고전표 및 매입전표의 프로젝트 코드 변경을 통해 기말 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미판매 프로젝트의 재료비 등을 매출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매출원가로 인식함에 따라 기말 재공품을 과소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 따르면,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 되지 아니한 프로젝트의 재료비는 재고자산(재공품)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실제 판매가 되어 매출을 인식할 때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문단 21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 위험이 유의적이라고 결정하면 해당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회사가 프로젝트별로 발생원가를 집계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별 재공품 및 매출원가에 대한 실증절차로서 프로젝트별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집계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세부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또한, 감사인은 기말감사 시 매입프로세스 이해목적으로 재공품명세서에서 3건의 프로젝트를 샘플로 선정하여 원재료비가 재공품에 적절하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3건 중 2건의 프로젝트에서 원재료 출고전표

금액의 합과 재공품 명세서상의 원재료 합계금액이 불일치 하였음에도 합계금액의 대사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 그리고, 감사인은 재고자산 손상평가목적으로 기말재공품으로 계상된 공사에 대한 실행예산서를 입수한 후 계약금액과 실행예산을 비교하여 재고자산의 손상여부는 검토하였으나, 실행예산서 상 계약일 및 납기일을 고려할 경우 실행예산 대비 기말재공품 금액의 비율(공사진척도)이 유의적으로 낮은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며 매출액 대비 재공품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재공품 과소계상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프로젝트별로 발생원가를 집계 및 관리하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귀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 현황과 내부통제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프로젝트별 원가 집계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증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①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② 매출의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기중 매출 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③ 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매출은 성격상 경영자주장 중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서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27 및 31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8 및 21에 따르면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

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 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전체 매출액과의 대사절차를 수행하였는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 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중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절차 위반]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인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① 매장 보관 재고에 대한 실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누락하는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였으며, ②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진부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총괄표(Lead Sheet)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 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일부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전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장 보관 재고자산 관련 실사입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 및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한다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총괄표(Lead Sheet)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 대사, 본사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및 일부 테스트 실사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매장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1. 법규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 업무제한 규정(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였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2.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은 모든 독립성 준수 의무자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성준수확인서 및 독립성 점검에 필요한 제반 정보(감사와 비감사업무 현황, 임직원의 전현직 고용관계 현황, 주식보유 등 경제적 이해관계 현황 등)를 징구하였으나, 업무수행이사가 개별 감사조서의 독립성 확인 조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착오로 한 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경과 후 이사를 교체하게 되었고, 감사인은 장기감사현황의 관리를 이사에게 일임하고 별도로 연속감사로 인한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 확인 조서에 연속감사를 수행한 차수와 함께 회계연도를 병기하여 연속감사기간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구성원에게는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구성원이 아닌 자의 감사업무 참여

1. 법규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인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반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회계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자를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따른 명령(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4호)을 위반하였다.

2.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인, 감사반의 기존 구성원이 외부감사대상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기를 원하자 차기연도 감사계약을 법정 감사계약기간(23.2.14.)내에 체결하기 위하여 감사반에서 탈퇴(2023.1.30.)하고 회계법인으로 소속을 변경(2023.1.30.)한 후, 2023년 2월부터 3월말까지 감사반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고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4조의 적용대상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 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시사점

감사인인 구성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3인 이상 참여, 감사반 소속이 아닌 자는 당해 감사반의 감사보고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음)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원에게는 외부감사법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